

(726)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창진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 개정(‘13.9.23.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사업 외에도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개량 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도록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